영등포구의회 제204회 임시회

##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討報告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7. 10. 23.

行政委員會 專門委員 崔光黙

#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檢討報告書

#### 1. 경 과

의안 제273호로 2017년 10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# 2. 제안이유

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른 우리 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별 비율을 정비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하고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 조금 관리 조례」 개정·시행('17.7.13.)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, 용역 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예외대상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가.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예외대상 정비(안 제4조제2항)
  - ○「지방재정법」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투、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에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변경
- 나.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별 비율 정비(안 제5조제4항)

- "여성위원의 비율이 30%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"를
  "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의거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
  어느 한 성(性)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
  않도록 하여야 한다"로 개정
- 다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양성평등기본법」,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

#### 5. 검토의견

- 이 개정 조례안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른 우리 구 용역과제심의 위원회 위원의 성별 비율을 정비하고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개정·시행('17.7.13.)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,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예외대상을 정비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,
- O 주요내용으로는.
  - 안 제4조제2항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예외대상 중 제3호 "「지 방재정법」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투·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"을 "「지방재정법」제3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

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"으로 개정하고, 「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 중 제 7조(심의위원회 기능)제1항제6호 주요사업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, 추 가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,

- 안 제5조제4항 위원회의 구성 중, "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30%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"를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에 따라 "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 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"로 개정하였으며,
- 그 밖에 안 제2조, 안 제3조, 안 제4조제2항제2호, 안 제5조제3항제4호, 안 제6조제3항, 안 제9조제2항, 안 제10조, 안 제13조, 안 제1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.
- 검토결과,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, 연관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 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그 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 참 고 자 료

### 1 양성평등기본법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
**제7조(위원회 기능)**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2017.07.13>

- 1.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
- 2.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
- 3.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
- 4.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
- 5.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
- 6. 주요사업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
- 7.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
- 8.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
- 9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